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상판결 : 대법원 1998.2.24. 선고 96 다 40998 호 판결"

안상운  
변호사

## 1. 사건 개요 및 경과

### 1. 사건 개요

가. 사단법인 한국광고주협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1994년 12월호(제 60호)는 제 5면 내지 제 7면의 "KAA 진단란"에서,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로 "일전에 모 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 사전심의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이하 "이 사건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나. 이에 대해 방송용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방송위원회는 1995년 1월 20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하였으나 중재가 불 성립되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 심판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인 방송위원회는 이 사건기사에 실린 두 개의 광고물 중 하나는 독학학위교재 판매회사인 와이제이물산이 이명박을 모델로 한 기업 이미지 광고물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아 외 1인을 모델로 한 상품광고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광고물이 아니며 또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심의신청을 한 것도 아니라 같은 날 심의신청한 것이고, 똑같은 광고물에 대해 하나는 상업문을 빼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하라고 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사실과 다른 이 사건기사의 내용은 정정보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를 모두 다루면서 이 사건기사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여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2. 사건 경과

가. 제 1심 법원 및 제 2심(원심) 법원은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1) 이명박 광고물과 김정아 광고물은 모두 1994. 9. 7.에 심의 신청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심의 신청도 같은 해 9월 26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기사 중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제출하면서"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2) 위 두 개의 광고물은 비록 광고주가 동일하지만 그 출연모델, 소구목적, 상업문 내용, 화면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명박 광고물은 주식회사 와이제이물산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고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추천보증에 없는 기업 이미지광고인 반면, 김정아 광고물은 모델로 하여금 학위수여시의 감격을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독학학사 교재의 판매를 소구하려는 상품광고이므로 별개의 광고물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기사 중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3) 이명박 광고물에는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상업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위 광고가 기업이미지광고인 점에 비추어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문장이 적절치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한 것임에 반해, 김정아 광고물에 나오는 '독학학위 교재안내'라는 문구는 위 광고가 상품광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업문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다만 위 문구 중 '안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문구로 정정하여 넣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나의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판결을 받았다."라는 부분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2)

나. 이에 따라 제 1 심 법원 및 제 2 심 법원은 각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 II. 판결요지

### 1. 제 1 심 판결 요지

가. 신청인의 '정정보도 심판청구'에 대하여 당초 제 1 심 법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6. 15. 결정 95 카합 1359)은 변론절차가 아닌 심문절차를 거쳐 특별한 이유의 설시없이 피신청인에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나. 위 결정에 대해 피신청인이 위 결정은 반론보도가 아닌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자 제 1 심 법원은 변론절차를 거쳐 당초에 한 '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5. 8. 31. 선고 95 카합 2283) 그 이유는 다음의 제 2 심 판결과 거의 같다.

### 2. 제 2 심(원심) 판결 요지(서울고등법원 1996.8. 13. 선고 95 나 38815)

피신청인의 항소에 대해 제 2 심(원심) 법원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권리는 이를 정정권과 반론권으로 나눌 수 있고, 양자의 차이점은 정정권이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그 정정을 구하는 것임에 대하여, 반론권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하는 주장의

게재를 요구하는 것인 바, 정기간행물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원 보도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반론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이유는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원 보도내용의 허위여부임을 가릴 필요없이 반박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다는 점에 있는 것인데, 우리 법제가 법문의 계명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1996. 7. 1 부터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으나, 이 사건기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었다)과 피해자가 청구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법원에 현출된 증거에 의해 원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필요한 경우 단순한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한 반론문의 게재만이 허용된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위와 같이 단순한 반론문의 게재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보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주체가 피신청인이 되는 것이므로, 정정보도문 말미에 신청인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이유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3. 상고이유 요지

"원심의 판단은 정정보도에 관한 우리 법제상의 틀을 변경시키는 독자적 해석입니다. 정간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리가 이와 같음에도 원심은 '법원으로서 필요한 경우 단순한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의견에 따를 경우에는 정간물법상의 반론권 이외에 정정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정정권의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법적 근거도 밝히지 아니한 원심 판결은 정간물법상의 반론권의 법리오해에 기인한 판결이고 위 법취지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파기함이 상당합니다. 원심은 위 법상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반대로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취지는 피해자의 반론권을 인정하되 반론권의 청구남용을 막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으며 이를 반대해석하여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임은 다시 말하여 정간물법상의 반론권이 언론자유와 피해자의 인격권간의 이익교량으로서 채택된 제도임을 몰각한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4. 대법원 판결요지(대법원 1998. 2. 24. 선고 96 다 40998)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 발행의 월간지에 게재된 이 사건기사 중 판시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신청인은 위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995. 12. 30. 법률 제 514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문의 제명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청구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일 법원에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원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도 필요한 경우 단순히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단순한 반론문의 게재만이 허용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6 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이하 원문보도라 한다)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 다카 1973 판결, 1991. 1. 15. 선고 90 다카 2546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정정을 구하는 정정보도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 III. 평 석

#### 1. 논점 (문제 제기)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처음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제도는 그 시행 초기부터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많은 의문과 논란을 불러왔다.<sup>3)</sup>

그것은 주로 '정정보도청구권'이 법문의 명칭 그대로 언론사로 하여금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하는 것인지(정정권) 아니면 언론에 보도된 자로 하여금 원래의 기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주장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인지(반론권)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란은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 '정정보도청구권'이 정간물법(이를 "구 정간물법"이라 한다)과 방송법에 흡수된 다음에도 1995년의 정간물법(이를 "신 정간물법" 또는 그냥 "정간물법"이라 한다)의 개정 때까지 지속되었다.<sup>4)</sup>

이 사건은 구 정간물법이 시행 중일 때 정정보도신청의 형식으로 제기되었는데 제 2심 판결시에는 신 정간물법이 시행되었다.

여기서 첫째, 구 정간물법 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정정권을 규정한 것인가 아니면 반론권을 규정한 것인가, 둘째, 전자의 경우라면 이는 언론사의 편집권과 재산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 아닌가, 셋째, 후자의 경우라면 정간물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에 정정권도 포함되는가, 넷째, 후자의 경우라면 반론보도문의 게재형식과 그 내용은 어떠하느냐 하는 쟁점이 제기된다.

## 2. 반론보도청구권이란?

가. 언론기본법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 5)은 일찍이 "언론기본법 제 49 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반드시 진실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목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의대상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므로 위 판시부분은 불필요한 판단이다."고 판결하면서 위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대법원은 위 정정보도청구권을 법문상의 명칭과는 달리 이를 반박보도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는 피해자에게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여지거니와, 언론사측으로서도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그 진실여부를 소상하게 가려내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면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은 저절로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를 이의가 제기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려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건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함은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그 후 1991년 1월 15일 선고 90 다카 25468 판결 등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도 1991년 9월 16일 결정 89 헌마 165에서 "정간물법 제 16조 및 방송법 제 41조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비록 그 표제 및 법문 가운데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명칭과는 달리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므로 정정보도청구는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대법원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6)

그 후 헌법재판소 1996년 4월 25일 95 헌바 25 결정도 위 89 헌마 165 결정 이후에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으므로 위 결정의 주문 또한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언론사의 주장에 대하여 위 결정의 판시이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 정간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반론(반박)보도청구권이 명백해졌다. (첫 번째 논점)

다. 이러한 전제에서 헌법재판소는 "보도내용의 진위를 가리지 아니한 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는 현행법제 아래에서 정정보도문이 만약 이름 그대로 언론보도의 잘못된

보도내용을 바로잡는다는 정정의 성격을 갖고 그와 같은 의미로 게재된다면, 이는 보도의 자유와 편집, 편성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정정보도문은 그 명칭의 표현과는 달리 보도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반박문의 성질을 가지고, 정정보도청구인의 이름으로 게재되고 있는 실무를 고려한다면, 비록 '정정'이라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인격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수단을 입법화함으로써 언론자유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주장을 배척하였다. (두 번째 논점)

### 3.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과의 관계(세 번째 논점)

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간물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구 정간물법상으로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반론의 수준을 넘어 원 보도내용의 정정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가?

나. 언론기본법에 '정정보도청구권'이 규정되기 이전에는 언론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는 민법 제 750 조 소정의 일반 불법행위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으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민법 제 763 조, 제 394 조), 예외적으로 민법 제 764 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병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특칙을 두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금전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이와 함께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적 구제를 인정하였고, 그 대표적 예가 사죄광고 게재이며 그 밖에도 원 보도내용의 취소나 정정, 반론기사의 게재 등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7)

다. 한편 언론기본법과 구 정간물법에 '정정보도청구권'이 규정되자 그것이 민법 제 764 조에 근거한 정정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전자는 그 법률조항의 명칭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은 반론권으로서 후자의 경우와는 별개의 제도(청구권)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언론 피해자나 언론사의 경우는 물론이고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실무에서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또 그 내용도 원 보도내용을 정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마치 언론기관이 자신의 보도에 대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내용의 '정정문'을 실는 것인 양 오해를 불러 일으켜 정정보도청구제도 역시 민법 제 764 조와 마찬가지로 명예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원상회복 청구제도로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통상인의 이해력을 기준으로 할 때에 기사관련자의 반박문게재청구인 것으로 이해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이처럼 구 정간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이 반론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용어가 정정보도로 되어 있는 관계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실무상으로는 오히려 민법상 인정되는 정정보도의 제도로 운영된 면도 있었다.8)

라.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1년 4월 1일 89헌마 160 결정에서 민법 제 764 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그에 대한 다른 대안으로서 우리민법 제 764 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사죄광고를 구하는 판결이 아니고도, ①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 판결의 신문, 잡지 등에 게재, ② 형사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의 신문, 잡지 등에 게재, ③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예회복처분으로서 사죄광고 대신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대두되자 민법 제 764 조에 근거한 정정보도청구권과 구 정간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마.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혼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구 정간물법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을 그 법적 성질에 맞게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9) 신 정간물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하게 되었는데, 10) 그럼에도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실무에서는 과거의 예처럼 반론보도청구를 하면서도 그 실질은 마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이 사건 대상판결의 하급심 판결도 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바.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 양자는 모두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으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념적 기초는 헌법 제 21 조 제 1 항의 언론의 자유에 내포되어 있는 악세스권과 언론 자유의 내재적 한계이론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11)

그러나 양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반론이란 상대방의 주장(언론보도)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정정이란 언론보도의 잘못을 전제로 하여 그 잘못을 언론사로 하여금 시정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언론보도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며, 반론을 주장하는 측은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반면, 정정의 경우에는 언론보도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가 허위라는 것은 정정을 주장하는 언론피해자의 입장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반론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반론을 주장하는 측의 그 주장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것이므로 반론문의 작성주체는 반론청구권자 자신이고 언론사가 아니다. 즉 언론사는 그가 발행하는 언론매체에 반론문을 실을 지면만을 무료로 할당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스스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반면 정정의 경우에는 상대방 언론사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 항복을 받는 것이므로,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패소한 경우 입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고 반면 언론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회복조치의 강도가 반론의 경우보다 훨씬 높으며, 일반 독자에게 주는 인상도 훨씬 깊은 것이다. 12)

사. 실정법상으로도 양자는 별개의 제도로 구분되어 있다. 즉 정간물법 제 18 조 제 1 항은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 또는 민법 제 764 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 16 조 제 1 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 19 조 제 2 항은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은 민법 제 764 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심판규칙(대법원 규칙 제 1432 호, 1996 년 6 월 27 일) 제 2 조 제 4 항은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신청과 민법 제 764 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 배상 청구 등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하여 정간물법에 근거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과 민법 제 764 조에 근거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이 엄연히 다른 제도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성질상의 차이에 기하여 반론의 제도는 특별법인 정간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만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한 반면에, 정정의 제도는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제소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신 정간물법 제 18 조 제 1 항은 "피해자는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처럼 필요적 절차가 아니라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다)

또 반론권의 경우에는 일종의 간이 재판절차로서 민사소송법상 본래의 본안소송절차와는 다른 가처분 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하고 있고(정간물법 제 19 조 제 3 항), 그 권리의 행사요건도 본안소송절차에서와 같은 엄격한 증거조사 등의 심리를 거치지 않는 반면 정정의 경우에는 본래의 민사 본안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 한편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는 언론보도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 보도내용에 대한 진실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신 정간물법상 반론보도청구소송의 심리는 반드시 변론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변론주의의 원칙상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조사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원 보도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피해자는 반박보도문의 게재가 아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체계상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은 그 행사요건 및 절차가 다르고, 신 정간물법 등이 구 정간물법 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정하여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과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된다는 조항(정간물법 제 16 조 제 4 항)을 종합해 볼 때, 반론보도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설사 신청인이 반론보도가 아닌 정정보도를 신청하였고 또 원 보도내용의 허위성이 입증된 경우라도 법원은 반론보도문의 게재가 아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sup>13)</sup>

그러나 그와 반대로 민법 제 764 조에 근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는 (그 대부분은 손해배상청구와 병합된 청구일 것이다.) 피해자(원고)는 사죄의 내용이 아닌 한, 정정보도이든 반론보도이든 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청구할 수 있고 반면 법원도 피해자(원고)가 정정보도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조사 결과 원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소송이나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반론보도를 신청한 경우 증거조사 결과 설사 원 보도내용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원칙 14)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자. 한편 논자에 따라서는 입법론으로서 보도내용이 허위인 때에는 언론사에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는 물론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도 반론을 넘어 정정까지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나,<sup>15)</sup> 그럴 경우 그에 따른 소송절차를 민사본안 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과 언론의 신뢰성 유지라는 반론보도청구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그것을 민사신청절차(가처분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보도의 자유와 편집·편성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 아니냐는 16)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인데 과연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 4. 이 사건 대상판결의 검토

가. 구 정간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이 그 실질은 '반론보도청구권'인 이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정정보도문이 아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하여 하며, 게재를 요구하는 반론문의 작성주체는 반론청구권자 자신이고 언론사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정간물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제목은 '반론문' 또는 '반론보도문', '...에 대한 반론보도문' 등의 형식으로 되어야 하며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붙여서는 아니된다.(네 번째 논점) 반면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청구에 있어서는 그 제목을 정정보도문, 정정 진술의 주체는 언론사, 내용은 정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sup>17)</sup>

나. 그런데 종래 법원의 소송실무에서는 구 정간물법상의 반론권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종래의 법조문에 충실하게 '정정보도문'으로 하고, 그 내용은 정정의 형식으로 하면서 그 진술의 주체를 언론사로 하거나,<sup>18)</sup> 또는 그 제목은 '정정보도문'으로, 진술의 주체는 신청인으로 하면서도 그 내용은 정정의 형식으로 한 경우, 그 제목은 반론문으로, 그 진술의 주체는 언론사로 한 경우 19)도 있었으나 신 정간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크게 개선되었다.<sup>20)</sup>

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1) 당초 구 정간물법에 근거하여 '정정보도'(현재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면서 그 제목은 '정정보도문'으로(밑줄은 필자), 그 내용은 "지난 '94년 12월(제 60호) 본지 5~7면 "KAA 진단"란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7면의...(필자 주: 이 부분은 이 사건기사와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한다. 이하 같다.)"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이와 같은 허위기사로 인하여 방송위원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진실된 기사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신청권자는 '정정보도신청인 방송위원회'로 하였다가, 제 1 심 재판의 도중에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그대로 두되, 그 내용은 "KAA 저널은 1994년 12월호(제 60호) 5면 내지 7면 "KAA 진단"란의 "방송심의 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7면에 …는 글을 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두 개의 광고물은 같은 날에 심의 신청을 한 것으로 시차를 두고 한 것이 아니며 똑같은 광고물도 아닙니다. 광고물 중 하나는 기업 이미지 광고였고, 다른 하나는 독학학위 교재인 일종의 상품광고였습니다. 똑같은 광고물을 하나는 상업문을 빼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하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정정보도합니다."라고 변경하였다.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아예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게재를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청구가 아닌 정정보도청구이므로 부당하다면서 그 대신 제 1 심 재판과정에서는 "KAA 저널은 1994년 12월호에서 …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출된 두 광고물은 동일한 광고물이 아니며 두 광고물에 모두 상업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하나의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빼도록 하고, 다른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정정하여 넣도록 한 것이 있으므로 이를 밝혀드립니다. "정정보도신청인 방송위원회"라는 '반론문'을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가, 제 2 심 재판에서는 "KAA 저널은 1994년 12월호에서 …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문 게재신청인인 방송위원회는 당시 제출된 위 두 광고물은 동일한 광고물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으며 '교재판매' 문구나 '교재안내' 문구나 모두 상업문이라고 판단하고서 심의 결정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반론게재 신청인 : 방송위원회"라는 '반론문'을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제 1 심 법원은 "본지는 1994년 12월호에서 …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출된 두 광고물은 동일한 광고물이 아니며, 두 광고물에 모두 상업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하나의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빼도록 하고, 다른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정정하여 넣도록 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밝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 하라고 판결하였고 제 2 심 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제 1 심 판결 및 제 2 심 판결 모두 '정정보도문'의 말미에 '반론보도신청인'을 표시하지 않았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당초 반론보도문의 게재 청구가 아닌 '사죄광고' 수준의 게재를 청구하였다가 제 1 심 재판과정에서 '정정보도'청구로 변경하였는데, 제 1 심 법원 및 제 2 심 법원은 구 정간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증거조사결과 원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단순한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당연한 귀결로서 정정보도문의 경우 정정보도의 주체는 피신청인(언론사)이 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본지는 …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것이므로 이를 알려 드립니다."라는 형식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하였다.

(5) 제 1 심 법원 및 제 2 심 법원은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증거조사결과 원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단순한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유로서 첫째, 구 정간물법이 법문의 제명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둘째, 피해자가 청구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구 정간물법 제 16 조 제 3 항 단서 규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시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구 정간물법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이 그 실질은 반론보도청구권임이 명백한 이상 단지 법문의 명칭만에 근거하여 그와 다른 성질의 권리를 도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제 2 심 판결당시에는 이미 위 법문의 명칭이 정정보도청구권에서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정된 이상 더욱 그러하다.

〈표〉 반론보도청구와 민법상 정정보도청구와의 비교

	반론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근거 법률	· 정간물법 제16조 내지 20조 · 방송법 제41조, 제42조 · 종합유선방송법 제45조	· 민법 제750조 내지 766조
관할	· 언론중재위원회/법원 ·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중재부/법원	· 법원 ·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적
당사자	· 청구인 :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당사자 적격의 확대) · 피청구인 : 정간물 등을 발행하는 기업	· 원고 : 불법행위를 당한 자 · 피고 : 기자, 발행인, 편집인 및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
절차	·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	· 법원에 제소
요건	·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 여부는 불문	· 고의 또는 과실 · 위법성 · 손해발생(인격권 등 침해) · 인과관계의 요건이 있어야 함
면책 사유	청구된 반론보도가 · 정당한 이익이 없을 때 ·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일 때 · 위법한 내용일 때 ·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국가 등 공개회의에 관한 사실기사일 때 언론사는 면책	·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310조)에 해당되는 경우 · 즉 사실의 공공성과 공익성, 진실 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언론사는 면책
심리	· 중재절차에의 출석의무 · 불출석시:신청인(1회):중재신청철회 피신청인(2회):합의각주 · 법원에 심판청구시에는 가처분 절차 준용	·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주장과 입증 필요)
구제 형식	· 중재성립시:반론보도문 게재 ·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시:반론보도문 게재 · 금전배상은 불가	· 손해배상의 지급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정정보도문의 게재 · 반론문 게재도 가능
기한 (제척 기간)	· 피해자가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해야 함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소해야 함(민법 제766조)
불복	· 중재 불성립시 법원에 반론보도 심판을 청구	· 판결에 불복시에는 항소 또는 상고 제기
집행	· 간접강제집행(민사소송법 제693조, 694조) · 법원의 반론보도게재 판결에 대하여는 집행정지가 배제됨	· 간접강제집행 · 집행정지 가능
가처분 신청여부	· 반론보도 신청과 별도로 가처분 신청 불가	· 제소에 앞서 보도금지가처분 등 신청가능(민사소송법 제714조)

둘째, 피해자로부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국 정간물법 제 16 조 제 3 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반론권 제도가 피해자 자신의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할 기회를 부여하고, 진실발견을 위한 시간적 지체를 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원 보도의 내용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굳이 따지지 아니한다는 것일 뿐 신청인에게 거짓말을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이 바라는 반론보도문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의 금지원칙상(민법 제 2 조 제 2 항) 반론보도청구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2) 그러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위 조항을 반대해석하여 위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정정보도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원 보도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증거조사 절차에 따라 따지려고 하는 경우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재판기일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피해구제의 신속성이라는 반론보도청구권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그런데 정간물법은 피해구제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며(정간물법 제 18 조 제 4 항), 또 반론보도청구사건에 대한 제 1 심 판결의 선고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 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규칙 제 4 조 제 1 항)22)고 규정하고 있다.

(6) 그러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의 예외사유를 반대해석하여 위 규정에서 반론보도청구권에 정정보도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시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한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 5. 결

결국 이 사건 대상판결은 구 정간물법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신 정간물법의 '반론보도청구권'과 같은, 반론권임을 재차 확인하였고 따라서 반론보도를 명하는 경우 그 주체는 피신청인인 언론사가 아니라 신청인이 되는 것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 주

- 1) 판례공보 제 55 호(1998. 4. 1. 자) PP. 842-843.
- 2) 피신청인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해서도 채증법칙위반 이라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 3) 양삼승, "정정보도청구권-법률적 측면에서의 고찰", 언론중재, 1982 년, 겨울호(통권 제 5 호), p. 13.
- 4) 1995. 12. 30 자로 개정된 신 정간물법(법률 제 5146 호)은 1996. 7. 1 부터 시행되고 있다.
- 5)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 다카 1973 호 판결

6) 그런 반면 위 결정에는 2 명의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개진하였는데, 그 취지는 정간물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정보도청구절차는 보도내용의 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보도기사 관련자 자신의 반론게재청구 절차임을 분명히 한 독일법과는 거리가 있으며 문리상으로는 논리상으로 오히려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져 이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 보아 무방하게 되어 있어 용어상으로는 내용상으로 반론권이라고 단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민법 제 764 조와 마찬가지로 명예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원상회복청구제도로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통상인의 이해력을 기준으로 할 때에 기사관련자의 반박문게재 청구인 것으로 이해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법 제 19 조 제 3 항이 위헌임을 면하려면 기사관련 당사자의 반박문게재 청구인 것으로 순화되고 뚜렷해지도록 현행법의 표현부터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고 언론기관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처분이 정정보도 청구인 것으로의 오해소지가 불식되도록 법이 새로 고쳐지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7) 자세한 내용은 양상승, "민법 제 764 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관한 연구-정정보도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1993 년, 가을호(통권 제 48 호), pp. 6-13 참조

8) 강경근, "개정 정간물법 해설", 언론중재, 1996 년, 봄호(통권 제 58 호), p. 32.

9) 자세한 내용은 양상승,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 개선방안', 언론중재, 1993 년, 겨울호(통권 제 49 호), PP. 7-20 및 같은 호 33-54 쪽에 실려있는 "언론침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안)" 논문 참조

10) 양상승, "개정된 언론중재제도-정간물법 개정에 따른 반론권의 해설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1996 년, 여름(통권 제 59 호), PP. 7-25.

11) 강경중, "반론보도청구권 및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언론중재, 1996 년, 가을호(60 호), pp. 6-15.

12) 양상승, "개정된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1996 년, 여름호(통권 제 59 호), p. 13.

13) 양복승, "언론보도청구사건의 주요쟁점", 언론중재, 1996 년, 겨울호(통권 제 61 호), p. 70.

14) 민사소송법 제 188 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15) 양경승, "반론보도청구권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 28 집, 법원도서관, 1997, p. 217.

16) 헌법재판소 1991. 9. 16. 89 헌마 165 호 결정 참조

17)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1. 26. 선고 94 가합 5021 호 판결

○ 전주지방법원 1997. 4. 18. 선고 96 가합 5949 호 판결, "정정보도문", "본보는 ...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18) 가령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6. 3. 26. 선고 95 카합 1209 호 판결, "정정보도문", "본지는 ...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를 정정보도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바로잡습니다."

19) ○ 서울지방법원 방부지원 1997. 10. 30. 선고 97 카합 3509 호 판결, 같은 1996. 10. 10. 선고 96 카합 1231 판결, 같은 1996. 6. 27. 96 카합 999 결정은 모두 "반론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 라고 반박해 오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드립니다."라고 판결하였다.

20) ○ 서울지방법원 1997. 11. 28. 선고 97 카기 6915 호 판결, 같은 1997. 10. 31.

선고 97 카기 6337 호 판결, "나는야, 통일 1 세대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 서울지방법원 1996. 8. 1. 결정 96 카기 2868, "공천헌금관련 반론문"

○ 서울지방법원 1995. 7. 5. 결정 95 카기 1885, "'PD 연합회보 친정서 변조의혹' 기사에 대한 반론문"

21)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 사, 1997, p. 568.

22) 그런 반면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 월 내에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 184 조)